

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대표자		
품질인증 업무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웹사이트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		

「디지털포용법」 제21조제3항 및 「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. 사업계획서 3. 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